

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본인은 아래 분할공제금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.

계약자 성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
○ 신청내용

지급방법	☐ 전체 분할지급 ☐ 일부 분할지급 (* 아래 분할지급/일시금지급청구액 기재)			
분할지급 청구액	원		일시금지급 청구액	원
지급기간 (*변경불가)	☐ 5년 ☐ 10년 ☐ 15년 ☐ 20년			
지급주기 (*변경불가)	☐ 매월(연 12회) ☐ 매분기(연 4회) ☐ 매반기(연 2회) ☐ 매년(연 1회)			
지급일	☐ 매월 ()일 ☐ 매분기 ()째달 ()일 ☐ 매반기 ()째달 ()일 ☐ 매년 ()월 ()일			

○ 분할공제금 수령계좌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

거래은행	은행	예금주	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
계좌번호			압류중 / 정상
압류방지계좌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	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

※ 은행 계좌의 압류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분할공제금 주요내용
※ 분할공제금은 공제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,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☐ 신청요건 ○ 만 60세 이상이면서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(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, 일반해약시에는 선택 불가) ☐ 지급방법 ○ 지급기간 : 5년, 10년, 15년, 20년 중 택일 (*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시시오) ○ 지급주기 : 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 중 택일 (*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시시오) ○ 지급일 :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 (변경가능) ○ 지급계좌 :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 (변경가능) ※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 ☐ 적용이율 :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동안 <u>기준이율 + 0.3%</u> 을 연 단위 복리로 지급 ☐ 세제 : 일시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제 적용 (이자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) ☐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(* [별지 제32호 서식] 분할공제금 일괄지급청구서 제출 필요) ○ 계약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○ 계약자의 청구시 계약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